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212호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도메인특화AI모델개발)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도메인특화AI모델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중소기업 유망기술 개발	국가전략기술	도메인특화 AI모델개발	3월 26일	4월 9일~5월 7일	5월~6월	7월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과제별 공고 참조

2.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붙임 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2026년 지원내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현장 수요 기반의 특화 AI 모델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생산성 강화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16개 과제 내외)

구분	예산	과제수	지원방식
도메인특화 AI모델개발	100억원 내외 * 1차년도 기준	16개 내외	자유공모 (품목지정)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혁신분야별 4개 과제씩 16개 내외 과제 지원 예정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도메인특화 AI모델개발	최대 2년, 25억 원 이내	75%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분야) 4대 업무혁신 분야, 36개 품목 內 자유공모 <붙임3> 참고

분야	내용	품목
제품혁신	고객요구 분석, 제품·서비스 개발, 설계 자동화 AI 등	9개
매출혁신	수출개척, 납품관리, 시장진출, 고객지원 AI 등	9개
경영혁신	인적관리, 재무·회계 관리, 전략·경영 기획, 행정 자동화 AI 등	10개
리스크혁신	정보보안, 안전사고 예방, 환경규제 대응, 법률·규제 자문 AI 등	8개

3.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업무혁신 관련 공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AI 솔루션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를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기관별 역할

수행주체	주요역할 및 기능
주관연구 개발기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 - 파인 튜닝을 통한 수요기업 맞춤형 모델 개발/고도화 - 분야별 데이터 관리(수집, 운영 등)
공동연구 개발기관-①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 수요기업 데이터 투입하여 파인튜닝 및 커스터마이징 - 수요기업에 AI 활용 역량 강화(교육 등) 지원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솔루션의 현장 적용 및 도입(수요기업) * 3개 이상 - 실제 현장 업무 데이터 수집 및 제공 -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의 실제사용 및 고도화 지원
위탁연구개발기관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등

□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AI 기술 기업)과 최소 3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 기관-②(수요기업)으로 필수 구성

- * AI모델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①를 컨소시엄에 추가 가능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컨소시엄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①을 포함하지 않아도 과제 수행 가능
-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AI 기술 기업)의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경우 컨소시엄 참여가능(컨소시엄 협약서 필수 제출)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신청가능(O)					신청가능(O)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①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A기업 [AI기술기업]	B기업 [SI기술기업]	C기업 [수요기업]	D기업 [수요기업]	E기업 [수요기업]	A기업 [AI기술기업]	B기업 [수요기업]	C기업 [수요기업]	D기업 [수요기업]
신청불가(X)					신청불가(X)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①	공동연구 개발기관②	
A기업 [AI기술기업]	B기업 [수요기업]	C기업 [수요기업]			A기업 [AI기술기업]	B기업 [SI기술기업]	C기업 [수요기업]	

- (유의사항) 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른 과제의 공동연구개발 기관-①로 중복 참여 불가

- * 단 다른 업무혁신 분야의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①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 가능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 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1-1]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6. 4. 9.(목) ~ 5. 7.(목),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 18시 이후에는 신청, 자료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에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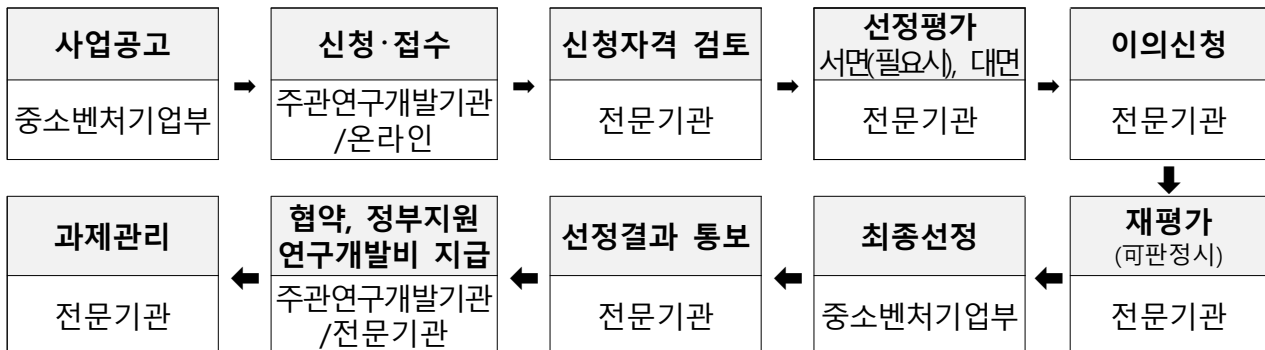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신청자격 등은 [붙임 2] 참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컨소시엄 약약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필수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6.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공동연구개발기관-②(수요기업)은 기술료 면제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7. 기타사항

- 과제 신청기업은 개발결과물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인공지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 관련 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절차) 등

*** 책무 불이행시,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GPU 등 연산자원은 임대 방식으로만 허용

- 개발된 AI 모델은 무료공개플랫폼을 통해 공개 필수

* 오픈소스 공개를 권장하되, 기업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기업 기밀정보가 포함된 학습데이터 등을 비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방식도 제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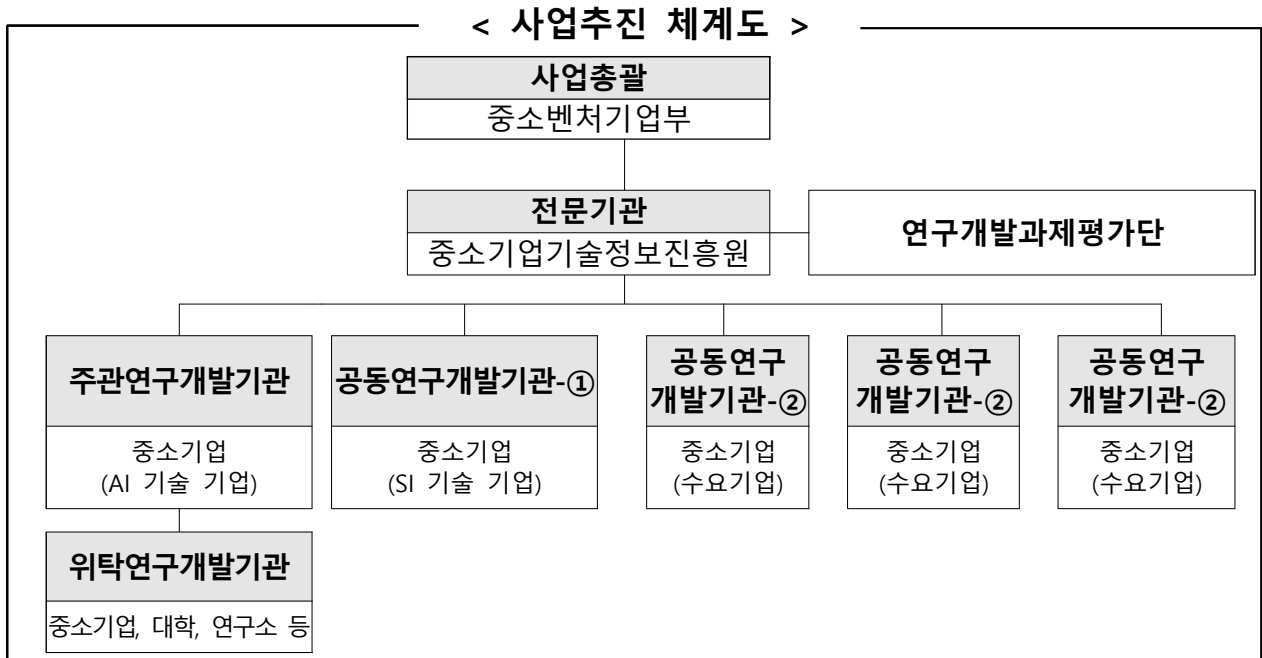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도메인특화AI모델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 체계



* 공동연구개발기관-②는 반드시 3개 이상 구성 필요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국번없이) 1357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1fqd

- [붙임 1-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 [붙임 1-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붙임 2] 도메인특화AI모델개발사업 세부 지원내용
- [붙임 3] 4대 업무혁신 분야 및 품목개요서
- [붙임 4] 제출서식

참고1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참고2**국세청 AI 스타트업 ·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징법 §13 ①)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국징령 §16)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

* 사업을 정상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국징법 §105 ①)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月*→1月)

*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처리

※ 중기부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